

# 시도지부관리규정

사단  
법인

대한철인3총협회

## 제1장 총칙

제1조 본 규정은 시·도연맹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각 시·도연맹은 지부이다.

제3조 각 시·도지부의 사무소는 각 시·도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지역적인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## 제2장 권리와 의무

제4조 각 시·도지부는 본연맹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
1. 대의원을 선출, 파견한다.
2. 본연맹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.
3. 본연맹이 주최,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.
4. 본연맹이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,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.

제5조 각 시·도지부는 본연맹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.

1. 본연맹의 정관,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2. 사업계획서, 사업보고서, 수지예산안 및 수지결산서를 본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.
3. 임원은 사·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본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.
4. 전국규모 선수권 대회는 본연맹의 승인없이 개최할 수 없다.

## 제3장 기구 및 임원

제6조(시·도지부 대의원 총회와 집행부)

① 시·도지부 대의원총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- 1) 시, 군, 구지부별 대의원 각 1인
- 2) 시·도지부 중앙대의원 약간명
- 3) 시·도지부 소재지의 단체군별 대의원 각 1인(사회인군, 학교군)

② 전항 제1호에 의한 대의원총회 구성이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·도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대의원 총회를 구성한다.

- 1) 등록단체(팀)별 대의원 약간명
- 2) 시·도지부 중앙대의원 약간명

3) 시·도지부 소재지의 단체군별 대의원은 시·도지부장이 소집한 단체군의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. 동일인이 2개의 단체군의 대표자회의의 대표가 될 수 없으며, 학생 및 현역선수는 대표자회의의 대표 및 총회 대의원이 될 수 없다.

4) 등록단체별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의 비례에 따라 그 정원을 정하되, 시·도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집행부의 선임임원은 다음과 같다.

- 회 장 1인

부회장 약간명

이 사 28인 이내(회장, 부회장, 전무이사 포함)

감 사 2인

④ 기타임원

대 의 원: 각지부별 1인

위촉임원: 고문 약간명

참여 약간명

위원 약간명

**제9조**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.

① 선임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, 선임임원의 2/3는 등록단체 임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.

② 대의원이라 하더라도 선임임원에 선출될 수 있으며, 선임임원에 선출된 후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.

③ 전무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한다.

④ 대의원은 등록단체의 장이 당해 등록단체의 임원중에서 서면으로 추천한다.

⑤ 감사는 2인중 1인은 본연맹의 추천을 받아서 선출하여야 한다.

⑥ 고문 및 참여는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
⑦ 동일인이 각각 다른 경기종목의 연맹체의 선임임원을 겸할 경우, 본연맹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.

⑧ 선임임원은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본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단 사·도체육회에 가맹이 되지 않은 지부는 본연맹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**제10조** 임원의 임기는 본연맹 정관에 규정된 바에 준하되 시·도지부장은 트라이애슬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를 선임한다.

## 제4장 시·도체육회 가맹

**제11조** 시·도지부는 대한체육회 시·도체육회에 가맹하여야 한다.

**제12조** 시·도지부는 각 시·도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고, 시·도체육회에 각각 가맹하여야 한다. 단 시·도체육회 미가맹 지부는 해당 지부 규약등 제반규정을 본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3조** 시·도지부는 시·도체육회 가맹사항을 본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시·도지부 산하 각급지부

**제14조** 각 도지부는 산하단체로써 시, 군, 구지부를 둘 수 있다.

**제15조** 시·도지부 산하단체는 본연맹의 규정에 따라 시·도지부에 준하여 조직을 한다.

**제16조** 시·도지부 산하지부는 본연맹과 시·도지부에 대하여 본규정의 제4조와 제5조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**제17조** 시·도지부 산하지부의 기구와 임원은 본규정 3장에 준한다.

## 제6장 부칙

제18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규약에 따른다.

제19조 본 규정은 1999 년 1 월 16 일 이사회 의 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